

2008. 12. 17(수) 10:00

제15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

「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」

심 사 보 고 서

중소기업육성 기금

재 난 관 리 기 금

산업건설위원회

「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08. 11. 14
- 제출자 : 거창군수
- 회부일자 : 2008. 11. 19
- 상정·의결일자 : 2008. 12. 11 (제5차 산업건설위원회)
- 의안번호 : 제2008 - 55호

2. 제안근거 및 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6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.

3. 기금운용 계획안(총괄)

<단위 : 천원>

구 분	2008년도말 현재액	2009년 운용계획안			2009년도말 현재액
		수 입	지 출	차액(적립)	
2 건	1,655,223	932,426	892,901	39,525	1,694,748
중소기업육성기금	813,837	539,064	52,901	486,163	1,300,000
재난관리기금	841,386	393,362	840,000	△446,638	394,748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<경제과 소관>

□ 중소기업육성기금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,
- 2005년도 6월 설치되어 적립목표액은 50억원으로서 200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원이며,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지원 용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 52,901천원임

<재난안전관리과 소관>

□ 재난관리기금

-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시설 및 장비의 확보, 신속한 복구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거창군 재난관리 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받아 운영되는 것으로, 편성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그 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- 2009년도 기금운용(조성)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841,386천원과 도비 보조금 230,000천원, 일반회계 전입금 130,000천원, 이자수입 33,362천원으로 되어 있으며, 지출계획은 동천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비 380,000천원과 자동경보장치우량국 설치 460,000천원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6. 수정내역 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8. 변동조서 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